

인권과 시민의 권리 선언 (1789)

프랑스 국민의 대표들은 국민의회로서 결성되어, 인간의 권리에 대한 무지, 망각 또는 경멸이 공공의 불행과 정부의 부패를 초래하는 유일한 원인이라고 고려하며, 인간의 자연적이고 양도할 수 없으며 신성한 권리를 엄숙한 선언을 통해 명확히 밝히기로 결의하였다. 이 선언이 정치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항상 상기됨으로써,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고, 입법권과 행정권의 모든 행위가 정치 제도의 본래 목적과 비교되어 더욱 존중받도록 하며, 시민들의 요구가 단순하고 명백한 원칙에 기초하여 헌법의 유지와 모든 사람의 행복을 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회는 최고 존재(Supreme Being) 앞에서 다음과 같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선언한다.

제1조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지닌 채 태어나며, 평등한 권리를 유지한다. 사회적 구별은 오직 공동의 이익에 기반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며 불가침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 이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억압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

제3조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위임받지 않은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제4조

자유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인간이 가진 자연적 권리의 행사는 법률에 의해 정해진 한계를 제외하고 제한될 수 없다.

제5조

법률은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만을 금지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것은 방해받을 수 없으며, 법률이 명하지 않은 것은 누구도 강요받을 수 없다.

제6조

법률은 일반 의사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 법률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법률은 보호와 처벌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시민은 능력에 따라, 그리고 덕성과 재능 외의 다른 차별 없이 공직에 임명될 자격을 가진다.

제7조

어떠한 사람도 법률에 의해 정해진 경우와 절차를 따르지 않고는 기소,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 독단적인 명령을 요청하거나 실행하는 자는 처벌받아야 하며, 법률에 따라 소환되거나 체포된 시민은 즉시 이에 복종해야 하며, 저항하는 경우 유죄로 간주된다.

제8조

법률은 반드시 명백히 필요한 처벌만을 규정해야 하며, 범죄가 행해지기 전에 제정되고 공포된 법률에 따라야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제9조

모든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며, 체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강제력만이 행사되어야 한다.

제10조

누구도 자신의 의견, 심지어 종교적 의견 때문에 방해받아서 안 된다. 단, 그 의견의 표현이 법률과 공공 질서를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제11조

사상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권리 중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다.

제12조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권력이 필요하다. 이 공권력은 특정 개인이 아닌, 모든 시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제13조

공권력의 유지와 행정 비용을 위해 일반 세금이 필요하다. 세금은 모든 시민이 각자의 지불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

제14조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 공공 세금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에 자유롭게 동의하며, 그 사용을 감시하고, 세금의 비율, 기초, 징수 방법, 그리고 지속 기간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15조

사회는 모든 공무원에게 그 행정 수행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권리 보장이 규정되지 않고,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는 헌법을 가진 것이 아니다.

제17조

재산권은 신성 불가침한 권리이므로, 공공의 필요성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정당하고 사전적인 보상이 지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할 수 없다.